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14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회사등에 대한 조제기록부 열람 등 허용 근거 마련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7.
- (3) 회 부 일 : 2026. 4.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회사등에 대한 조제기록부 열람 등 허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약사가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조제기록부) ①·② (생략)	제30조(조제기록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

	<u>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1)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환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²⁾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³⁾,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도 이에 맞추어 보험회사등이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보험회사등이 약제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제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점,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약국이 보험 회사등에게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될 경우 「약사법」에 조제기록부 열람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환자의 자동차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환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 약국의 상당수는 소규모 개인약국이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 체계가 도입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약제비 청구를 위한 추가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약국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의결을 전제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교통사고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해야 하는 현행 약제비 청구 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공감함.

□ (대한약사회)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

① 환자 편의성에 대한 실효성 부족

-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가 약국에 방문할 때, 약국에서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고번호 확인과 지불보증서 발급 절차를 반복해야 함. 이로 인해 환자는 자동차보험 적용대상 확인을 위해 2-30여분 간 추가로 대기하여야 함. 최근 구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실손24)' 인프라를 자동차보험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환자는 별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동시에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임.

② 약국의 추가 행정업무 가중 및 약료서비스 질 저하 발생

- 의원급 의료기관(평균 인력 3인 이상) 대비 약국은 '1인약사(또는 + 1인 전산원)' 근무 환경이 대부분이며, 약국의 가용 행정 인력은 극히 제한적임.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 사고번호 확인 및 보험사 지불보증서 접수 등의 행정업무 절차가 약국에 추가될 경우, 약사 본연의 업무인 조제, 복약지도,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집중도 저하가 불가피함. 이는 결국 추가적인 업무량에 대한 별도보상도 없이 조제투약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본연의 건강보험 약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됨.

③ 약국관리프로그램 개편으로 약국에 일방적 비용부담 전가 및 약사 업무량 투입대비 충분한 적정수가 보상 마련

- 약국이 자동차사고 약제비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약국 관리 프로그램 내 청구 모듈 개발 및 심평원 연동 시스템 구축 등 대대적인 인프라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약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피보험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편익이 극히 낮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약국의 자동차보험 청구 도입은 행정 인력이 부족한 약국에 행정부담만 과중시켜 약사 업무의 집중도를 저하시켜고 환자 불편(약국 대기시간 가중)을 초래하며, 약국관리프로그램 신규 구축·유지를 위한 비용 또한 약국이 부담해야 함
- 아울러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조제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강보험 환자대비 약사 추가 업무량(자보험자 사고번호 확인, 지불보증서 징구, 예기치 않은 민원 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건강보험 조제수가에 더하여 적정한 자동차보험 조제수가 책정과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한한약사회)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선지급한 후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현행 구조는 불편과 부담을 초래함. 약국이 병원과 같이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민 편의 증진과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

-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약국에 약제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국이 보험회사 등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 등이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보험 체계 내 약제비 관리 및 심사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여 보험자의 비용 관리 기준이 의료기관의 처방과 연계되어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방이 사후적인 비용 심사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 판단과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약국이 자동차보험 약제비를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도입될 경우 청구 주체는 약국이지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약제비 지급 제한이나 삭감 등 비용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처방과 관련된 사유로 비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국, 보험회사, 의료기관 간 책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수를 기존 18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약사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 치료 및 재활 등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위원 구성의 변화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의료현장의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 의 처

02)6788-5504